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80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김승원·강훈식·임호선

박균택 · 장경태 · 이광희

이성윤 • 박범계 • 권칠승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 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3(명단 공표)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			
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u>3천만원</u> 이하	<u>1</u> 억원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1조의3(명단 공표) ① 위원회		
	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		
	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		
	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 <u>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